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0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김○○
피 고	별지 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참가행정청	○○○○○장관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2022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직법에 따라 설립되어 혈액·병원 사업을 비롯하여 재난구호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그 일환으로 희망 풍차사업[1]도 실시하고 있다)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3 제3호에서는 원고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 12. 31.까지 재산세를 2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피고들 관할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22년 재산세를 25% 경감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는 내용의 지특법 제2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가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인해 주거가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복지지원사업을 말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1) 이 사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를 위해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원고를 긴급지원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그에 따라 희망 풍차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3) 이처럼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항 및 지특법 제22조 제1항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2020. 1. 15.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생략).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생략).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생략).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단서 생략).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원고는 위 개정 연혁을 기초로 하여, 2020. 1. 15. 지특법 개정 전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었으나 2020. 1. 15. 개정된 이 사건 조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설령 사회복지사업법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 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허)목('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 사건 조항은 2023. 3. 14. 재차 개정되었는데, 개정 지특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산세 면제 대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만일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률 제16865호의 시행일인 2020. 1. 15.부터 법률 제19232호 시행일인 2023. 3. 14. 전까지는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부의 '2020년 시행 지특법 개정내용'과 '2023년 시행 지특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를 근거로 들며,[2] 2020. 1. 15.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시행 지특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당 사업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당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2023년 시행 지특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일부 사회복지시설[구 지특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 적용의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되 감면 세목 및 감면율(무료시설의 경우 50%의, 유료시설의 경우 25%의 재산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형태로 변경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히 지특법 제40조의3에서는 ○○○○○○ 조직법에 따른 ○○○○○○, 즉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

2) 2024. 6. 24.자 원고 준비서면 참고자료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의 비율로 경감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둔 것으로서,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0조의3 규정과 충돌이 발생하고, 제40조의3 규정을 둔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지특법 내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판사 곽○○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소장 기재 순번) 피고
1	2. ○○특별시 ○구청장
2	3. ○○특별시 ○○구청장
3	4. ○○특별시 ○○구청장
4	5. ○○특별시 ○○구청장
5	6. ○○특별시 ○○구청장
6	8. ○○시장
7	9. ○○광역시 ○○청장
8	10. ○○시장
9	11. ○○광역시 ○구청장
10	12. ○○광역시 ○구청장
11	13. ○○광역시 ○○구청장
12	14. ○○광역시 ○구청장
13	15. ○○시장
14	16. ○○군수
15	17. ○○시 ○○구청장
16	18. ○○광역시 ○구청장
17	19. ○○시 ○○구청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18	20. ○○시장
19	21. ○○시장
20	22. ○○시장
21	23. ○○시장
22	25. ○○시장
23	27. ○○시장
24	28. ○○시장
25	29. ○○시장
26	30. ○○시장
27	31. ○○시장
28	32. ○○군수
29	33. ○○시장
30	34. ○○시 ○○구청장
31	35. ○○광역시 ○○○구청장
32	36. ○○시장
33	37. ○○시장
34	38. ○○시 ○○출장소장
35	39. ○○시 ○○구청장
36	40. ○○시 ○○구청장
37	41. ○○시 ○○○구청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38	42. ○○시장
39	43. ○○시 ○○구청장
40	44. ○○시 ○○구청장
41	45. ○○○시장
42	46. ○○시장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목록	피고	처분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합계[1]	심판청구 기각결정
1	○○특별시 ○○구청장	소 취하				
2	○○특별시 ○구청장	2022. 9. 10.	64,981,250	8,802,460	**73,783,710**	
3	○○특별시 ○○구청장	2022. 9. 10.	11,047,160	1,430,070	**12,477,230**	
4	○○특별시 ○○구청장	2022. 9. 10.	27,245,770	3,638,970	**30,884,740**	**2023. 9. 26.**
5	○○특별시 ○○구청장	2022. 9. 10.	41,191,240	5,540,620	**46,731,860**	(갑 제5호증의1
6	○○특별시 ○○구청장	2022. 9. 10.	381,895,880	46,476,070	**428,371,950**	'조세심판결정통지')
7	○○시 ○○구청장	소 취하				
8	○○시장	2022. 9. 8.	4,516,905	590,330	**5,107,230**	
9	○○광역시 ○구청장	2022. 9. 6.	8,735,133	1,114,790	**9,849,920**	

[1] 10원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10	속초시장	2022. 9. 6.[2]	4,678	930	5,608	
		2022. 9. 7.[3]	1,456,521	164,220	1,620,740	2023. 10. 25. (갑 제5호증의5 '조세심판결정통지')
11	○○광역시 ○구청장	2022. 9. 15.	25,370,800	3,023,630	28,394,430	2023. 9. 10. (갑 제5호증의1 '조세심판결정통지')
12	○○광역시 ○구청장	2022. 9. 5.	15,408,488	2,220,510	17,628,998	
13	○○광역시 ○○구청장	2022. 9. 6.	164,026,675	21,857,820	185,884,490	
14	○○광역시 ○구청장	2022. 9. 8.	15,637,935	1,882,080	17,520,010	
15	○○시장	2022. 9. 5.	39,506,647	4,756,440	44,263,088	2023. 8. 29.[4] (갑 제5호증의2 '조세심판결정통지')
16	○○군수	2022. 9. 6.	10,877,839	1,406,980	12,284,818	
17	○○시 ○○구청장	2022. 9. 7.	18,156,494	2,627,620	20,784,110	
18	○○광역시 북구청장	2022. 9. 6.	23,346,937	3,156,260	26,503,190	
19	○○시 ○○구청장	2022. 9. 6.	6,796,332	703,980	7,500,310	
20	○○시장	2022. 9. 6.	3,088,388	332,970	3,421,350	

[2] ○○도 ○○시 ○○동 ○○-○동 ○○○호(면적 9.27㎡)에 대한 부과처분

[3] ○○도 ○○시 ○○동 ○○○-○ 외 1건(면적 1,296㎡)에 대한 부과처분

[4] 원고는 조세심판결정통지서를 2023. 8. 31.에 수령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우편 배송조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21	○○시장	2022. 9. 7.	1,411,490	158,670	1,570,160	
22	○○시장	2022. 9. 6.	607,591	50,630	658,220	2023. 9. 15. (갑 제5호증의3 '조세심판결정통지')
23	○○시장	2022. 9. 7.	265,166	27,430	292,590	
24	○○군수	소 취하				
25	○○시장	2022. 9. 27.	1,186,143	149,010	1,335,150	
26	○○군수	소 취하				
27	○○시장	2022. 9. 6.	125,928	25,180	151,100	
28	○○시장	2022. 9. 6.	11,537,940	1,523,280	13,061,220	
29	○○시장	2022. 9. 7.	2,997,697	368,980	3,366,670	2023. 9. 25. (갑 제5호증의4 '조세심판결정통지')
30	○○시장	2022. 9. 6.	5,616,409	657,280	6,273,680	
31	○○시장	2022. 9. 15.	20,435	2,400	22,830	
32	○○군수	2022. 9. 6.	2,119,601	245,970	2,365,570	
33	○○시장	2022. 9. 8.	22,859,009	3,349,190	26,208,190	
34	○○시 ○○구청장	2022. 9. 3.	30,143,276	4,023,510	34,166,780	
35	○○광역시 ○○○구청장	2022. 9. 15.	68,047,769	8,982,140	77,029,900	
36	○○시장	2022. 9. 5.	2,408,816	315,740	2,724,550	2023. 10. 25.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37	○○시장	2022. 9. 7.	3,052,896	361,040	3,413,930	(갑 제5호증의5 '조세심판결정통지')
38	○○시 ○○○장소장	2022. 9. 7.	1,974,507	224,620	2,199,120	
39	○○시 ○○구청장	2022. 9. 5.	1,937,335	223,500	2,160,830	
40	○○시 ○○구청장	2022. 9. 5.	580,779	68,320	649,090	
41	○○시 ○○○구청장	2022. 9. 2.	2,296,957	281,640	2,578,590	
42	○○시장	2022. 9. 7.	6,348,996	802,400	7,151,390	
43	○○시 ○○구청장	2022. 9. 2.	123,464,326	18,038,550	141,502,870	
44	○○시 ○○구청장	2022. 9. 8.	19,141,336	2,533,820	21,675,150	
45	○○○시장	2022. 9. 7.	17,137,261	2,293,780	19,431,040	
46	○○시장	2022. 9. 5.	14,926,698	1,868,860	16,795,550	
합계			1,203,499,433	156,302,690	1,359,801,920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끝.